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3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황 희 · 박수현 · 문진석
한민수 · 손명수 · 박용갑
신영대 · 허 영 · 박희승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숙박·음식·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15조 신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역관광발전지수) ① 정부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의 관광 발전 지수(이하 “지역관광발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광발전지수가 공표된 경우 정부는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지역관광발전지수) ① 정</u> <u>부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u> <u>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u> <u>교통 · 숙박 · 음식 · 안전 등 지</u> <u>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 발</u> <u>전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의 관</u> <u>광 발전 지수(이하 “지역관광</u> <u>발전지수”라 한다)를 개발 · 조</u> <u>사 ·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u> <u>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광발전</u> <u>지수가 공표된 경우 정부는 지</u> <u>역관광발전지수의 결과를 기본</u> <u>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u> <u>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정책에</u> <u>반영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지역관광발전지수</u> <u>의 조사 항목 · 방법 및 결과</u> <u>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